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2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우재준 · 김기웅 · 임이자

김소희 • 박충권 • 서천호

구자근 · 김승수 · 권성동

김석기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 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 나. 누구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 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안 제91조제5호의2).
-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관련 제품을 판매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대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제5호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저장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행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 탈거 등 금지) ① ----------<u>자동차</u>및 건설기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 스 관련 부품을 탈거 • 훼손 • 해 체 · 변경 · 임의설정 하거나 촉 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 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 <신 설> 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 련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 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 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관련 제 품을 판매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의3. (생략)
-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 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 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신 설>

6. ~ 13.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
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
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
나 구매 대행 하여서는 아니된
<u>다.</u>
세91조(벌칙)
1. ~ 4의3. (현행과 같음)
5. 제57조의2제1항을
5의2.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자
6. ~ 13. (현행과 같음)
세94조(과태료)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 략) <u><신 설></u>

1의4. ~ 1의5. (생략)

2. ~ 3. (생 략) ② ~ ⑥ (생 략)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자

1의5. ~ 1의6. (현행 제1호의4 및 제1호의5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